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8.12.24, 2019.12.31, 2020.12.29, 2021.3.16, 2021.12.28>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다만,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서는 5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3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19.12.31, 2021.3.16>
- ③ 삭제 <2018.12.24>
-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 ⑤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2항을 적용한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제2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3.16>
- ⑥ 제5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신설 2021.3.16>
- ⑦ 제6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제2항을 적용한다. <신설 2021.3.16>
- ⑧ 제1항, 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청년등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3.16>

[본조신설 2017.12.1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①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말한다.
- ②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 란 제23조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 라 한다)를 말한다.
- ③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 란 상시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9. 2. 12., 2021. 2. 17., 2021. 4. 6., 2022. 2. 15.>
 - 1.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 다만, 해당 근로자가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 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3.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 ④ 삭제 <2021. 2. 17.>

1.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1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 1)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법 제29조의7 제1항 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법 제29조의7 제1항 제1호의 금액)

- 2) 그밖의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를 한도로한다)
× 법 제29조의7 제1항 제1호의 금액]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법 제29조의7 제1항 제2호의 금액]

나.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법 제29조의7 제1항 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 1)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수를 한도로 한다)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times$ (법 제29조의7 제1항 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times$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 $\times$ 법 제29조의7 제1항 제1호의 금액 $\times$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 2) 그 밖의 경우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

나.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수를 한도로 한다)
 $\times$ (법 제29조의7 제1항 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times$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 ⑥ 제5항을 적용할 때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제3항제1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한다. <개정 2020. 2. 11.>

- ⑦ 법 제29조의7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개정 2019. 2. 12.>

1. 상시근로자 수 :

$$\frac{\text{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text{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frac{\text{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의 합}}{\text{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⑧ 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
- ⑨ 제7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13항을 준용한다.
- ⑩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2.>

[본조신설 2018. 2. 1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⑪ 제7항과 제8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는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이 경우 제10항 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하되, 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4.2.21, 2015.2.3, 2016.2.5>

제10항 제2호 단서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1. 계산식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2. 지원요건

-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제10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제10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는 제외한다]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것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다. 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을 포함한다], 그 밖에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없을 것
라.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3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 이상일 것

- ⑫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신설 2012.2.2, 2013.2.15, 2014.2.21, 2015.2.3, 2018.2.13, 2019.2.12>

1. 창업 [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10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0
2. 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10항제1호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나. 제11조[기술비법의 범위 등]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기술비법의 범위 등)

①법 제12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정의) 제5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정의) 제5항제2호의 소액주주등을 판정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제2항 중 "**100분의 1**"은 "**100분의 30**"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정의)

⑤ 법 제2조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9. 2. 12.>

1. 임원(제40조(접대비의 범위)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결손금공제), 제19조(손비의 범위), 제38조(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및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법」 제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등”이라 한다)와 그 친족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등**"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등을 소유한 주주등

[해당 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인 자는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2.2.2, 2019.2.12>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가. 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직원(비소액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

나.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해당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제1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19. 2. 12.>]

소득세법 시행령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① 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 및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개정 2012. 2.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 ① 법 제2조(정의) 제20호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 ② 법 제2조(정의) 제20호나목에서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 ③ 법 제2조(정의) 제20호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조특, 서면-2020-법인-6004 [법인세과-590] , 2021.03.15

[제 목]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시 청년 정규직근로자 해당여부

[요 지]

직전 과세연도에 29세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는 포함하지 않고,

추징세액 계산시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임**

[회 신]

직전 과세연도에 29세(직전과세연도 중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 제1호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5항을 적용할 때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8.12.24, 2019.12.31, 2020.12.29>

2018.1.1.이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2021.1.1.이후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⑥ 제5항을 적용할 때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제3항제1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한다. <개정 2020.2.11>

⑤ 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으로 ' 19년에 고용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 신청
- ' 19년 10월 입사한 A근로자가 만 29세로 입사 당시 청년에 해당하여 청년 상시근로자 수에 산입하여 공제 신청
- A근로자는 ' 20.1월말까지는 29세였으나, 2월말에는 만 30세가 됨

2. 질의내용

- 만 29세로서 청년이었던 근로자가 다음 사업연도에 만 30세가 된 경우 다음 사업연도에 청년 상시근로자로 보아 제도를 적용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